

# 의정부우정 A-2블록 특별공급

## (기관추천 · 국가유공자 · 지역균형) 안내

- ▶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4조에 의해 **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됩니다.** 또한 주택소유 및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당첨자는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, 신청접수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**계약체결이 불가하며**,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어 **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(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)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.**
- ▶ 의정부우정 A-2블록의 경우 '21.10월 사전청약이 진행된 단지입니다.
- ▶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자에 **LH청약플러스(apply.lh.or.kr)**를 통해 인터넷 청약 신청하여야 하고,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**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**  
**※ 인터넷 청약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**
- ▶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(apply.lh.or.kr)의 입주자모집공고문(2026.8월말 공고 예정)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▶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청약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,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'공급자격' 및 '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'를 충분히 안내·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고, **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**

### I 공급개요 및 일정

□ 공급대상 : 의정부우정지구 A-2블록

□ 공급호수 : 공공분양주택 463호

| 주택형 | 발코니<br>유형 | 타입  | 공급면적     |          |         | 공급<br>호수<br>(호) | 입주<br>시기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    |           |     | 주거<br>전용 | 주거<br>공용 | 계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59  | 확장        | 59A | 59.92    | 24.0580  | 83.9780 | 348             | 입주자<br>모집공고문<br>참고 |
|     |           | 59B | 59.96    | 24.0741  | 84.0341 | 115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
※ 기관별 신청가능 주택형 및 배정물량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분양가격 : 미정 [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]

## □ 공급일정(예정)

| 구 분         | 일 자 (예정) | 참고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입주자모집공고     | '26.8월 말 | LH청약플러스(apply.lh.or.kr)에서 공고확인<br>및 인터넷 청약 접수(현장접수 불가) |
|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자 | '26.9월 중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추후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“입주자모집공고문”을 통해 확정된 일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 모두 위 접수일자에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

##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

### □ 기본요건

- 입주자모집공고일(2026.8월 말 예정) 현재 수도권(서울특별시, 경기도, 인천광역시)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제1항제27호의2의 도시활력증진/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)으로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, 제42조 및 제45조에 의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(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)로 선정하여 우리 공사에 추천한 자
- (당첨예정자)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'당첨자'로 선정·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'당첨자'가 되는 분
- (예비대상자)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'예비자'로 선정·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'당첨자'가 될 수 있는 분
- 입주자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) 구비여부

#### • 입주자저축 불필요

국가유공자,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대상자, 장애인, 철거민,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·건축물 소유자

#### • 입주자저축 필요 - 가입 6개월 경과, 월납입 6회 이상

북한이탈주민, 장기복무 제대군인, 10년 이상 복무군인, 우수기능인, 중소기업근로자, 의사상자, 납북피해자, 다문화가족, 우수선수, 대한민국체육공자

### ※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기준

아래 [무주택세대구성원] 전원(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)이 다음 [주택 및 분양권등]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

#### [무주택세대구성원]

-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(이하 '주택공급신청자'라 함)
-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
-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
-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
-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

#### [주택 및 분양권등]

-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
-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
- 나목에 따른 지위(이하 “분양권등”이라 한다)를 승계취득(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

※「민법」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,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,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.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.

## □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
- 입주자모집공고일(2026.8월 말 예정)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분
- 입주자모집공고일(2026.8월 말 예정)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분
- 과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(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,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, 토지임대부 분양주택,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)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특별공급 또는 동규칙 개정(‘10.2.23) 이전에 “3자녀 우선공급” 및 “노부모부양 우선공급”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(다만, 동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, 제27호의2,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없음)
-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(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)에 있는 분 등
-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(국가유공자,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대상자, 장애인, 철거민,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/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는 제외)

※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,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

## □ 당첨자 선정방법

- 신청주택의 동·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, 사전청약 당첨자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동별·층별·향별·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됩니다. (미계약, 미신청 동·호 발생 시에도 동·호 변경 불가함)
-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(신혼부부, 생애최초, 다자녀가구, 노부모부양, 신생아 포함)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됩니다.  
(특별공급에 신청 미달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한 예비대상자에게도 당첨 기회가 없습니다.)

## III 유의사항

-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·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[내청약플러스\(apply.lh.or.kr\)](http://apply.lh.or.kr)에서 별도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.  
(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불가)

- 공급대상 주택 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될 예정인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,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- 기관추천 · 국가유공자 ·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, 다른 특별공급(다자녀가구, 신혼부부, 생애최초, 노부모부양, 신생아)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**신청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중복·교차 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.**
-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.
- 단, 예비대상자는 일반공급만 중복신청이 가능하며,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.
- 주택타입별로 접수하며, 동·호 배정은 동별·층별·향별·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.  
(잔여 동·호 발생 시에도 동·호 변경 불가)
- 주택형 및 주택타입 세부사항 등은 공고일 이후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팸플릿 및 사이버견본주택 주소는 공고일 이후 LH청약플러스에 공고문과 함께 게재 예정)
- 전매제한기간 및 거주 의무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주택소유 여부, 수도권 거주요건, 재당첨 제한 등의 신청자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부적격자(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)로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(계약체결 불가,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)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, 기준, 일정, 방법,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안내문은 기관추천, 국가유공자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등 신청을 위해 필요한 대략적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,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, 공급일정, 유의사항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의정부우정 A-2블록 공공분양 문의

▶ LH청약플러스 : [apply.lh.or.kr](http://apply.lh.or.kr)

▶ LH콜센터 : 1600-1004

※ 추천 대상자 선정 관련 내용은 각 추천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.

※ 신청자가 위 사실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LH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‘공급자격’ 및 ‘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’ 여부를 충분히 안내,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의정부우정지구 토지이용계획도



※ 상기 토지이용계획도는 '26.8월말 입주자모집공고(예정)를 위해 준비중인 자료로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정된 공급주택 관련 이미지 자료 등은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공되는 팸플릿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의정부우정지구 A-2블록 단위세대 평면도

| 59A (348호) | 59B (115호)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           |            |

- ※ 위 도면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※ 확정된 공급주택 관련 이미지 자료 등은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공되는 팸플릿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